

# 진료협력센터 운영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울산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UUH Referral Center: URC 이하 "URC"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목적)

URC는 외부 의료기관과 울산대학교병원 간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고,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용어 정의)

1. "URC 회원"이란 병·의원에 소속된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URC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환자 의뢰 및 회송에 참여한 의사 및 협력 병·의원에 소속된 의사를 말한다.
2. "협력병원"이란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의 5인 이상의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등이 협력병원 신청 후 협의를 통해 상호 환자 의뢰, 의학정보 교류, 병원경영정보 교류, 의료기술 자문 및 견학, 검사 의뢰 및 회신, 병원 홍보 상호지원, 전산화 자문, 진료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울산대학교병원과 협약 체결한 병원을 말한다.
3. "회원병원"이란 개원의, 전문의 5인 미만 요양병원 및 전문병원 등이 회원 병원 신청 후 협의를 통해 상호 진료의뢰 및 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울산대학교병원과 회원 체결한 병원을 말한다.
4. "비공식 협력병원"이란 본원과 진료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환자 진료 의뢰 및 회송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을 의미한다.
5. "의뢰"란 협력 병·의원 및 비공식 협력병원에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래 진료 및 응급, 입원 진료 등의 방법으로 협진을 요청하는 경우와 본원에서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본원에서 제공하기 힘들 경우, 본원에서 시행하지 않는 시술, 약물요법,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타 상급 의료기관으로 진료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6. "회신"이란 협력 병·의원 및 비공식 협력병원에서 진료협력센터로 진료 의뢰한 환자 중 개인정보공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뢰한 병·의원 의사에게 진료 및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회송"이란 본원에서 급성기 및 중증 진료가 종료되어 담당의사 판단 하에 진료 협력 병·의원으로 의뢰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주요업무)

#### 1. 진료의뢰

- ① 1·2차 의료기관 등에서 본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진 전화 의

뢰, 온라인(URC 홈페이지, 진료의뢰·회송 중계포털, 카카오톡 채널 등) 의뢰를 통해 상담 및 예약을 한다.

## 2. 진료결과 회신

- ① URC로 의뢰한 환자의 진료 결과를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 의뢰한 의사에게 신속히 회신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회신을 하며, 진료정보공개동의 여부는 의뢰병원에서 받아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외래 회송

- ① 본원의 진료가 종료되었거나 연고지 병원에서 치료 연계가 필요한 경우 병·의원으로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URC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상담을 통해 회송 병원을 선정 후 회송 소견서와 검사 결과지 등을 타 병원 내원 시 지참하도록 안내한다.

## 4. 입원 회송

- ① 본원에서 급성 기 및 중증질환 치료 종료된 경우, 적절한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URC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전원 소견서를 확인 후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하여 요구도, 환자 상태, 회송 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회송 기관을 선정한다.
- ③ 회송 기관으로 전원 소견서와 검사 결과지 등을 송부 후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 후 전원 한다.

## 5. 온라인 시스템 운영

- ① URC 홈페이지(urc.uuh.ulsan.kr), 진료 의뢰·회송 중계 포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진료 의뢰 및 의뢰 환자 진료 결과를 제공한다.

## 6. 협력 병원 체결 및 관리

- ① 협력병원 지원 신청한 경우 내부 품의를 통해 협력병원으로 체결 업무 협약식 진행 후 협약서 및 '진료협력기관' 현판을 지급한다(단, 사정에 따라 협약식을 생략하기도 함).
- ② 의료진 변동사항 및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력병원 관리를 한다.

## 7. 회원 병원 체결 및 관리

- ① 회원 병원 지원 신청한 경우 내부 품의를 통해 회원병원으로 체결하며, '진료협력기관' 현판을 지급한다.
- ② 의료진 변동사항 및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정기적으로 회원 병원 관리를 한다.

## 8. 협력병원 심포지엄

- ① 협력 병·의원 의료진 및 관계자 대상으로 년 1회 심포지엄을 통해 본 센터 및 본원의 연구 실적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의료기관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도모한다.

## 9. 기타

- ① URC 회원 관리: 회원 등록 및 관리, 불편 불만 접수 및 처리한다.
- ② 협력병원 신청접수 및 체결 등의 관리 제반 사항을 확인한다.
- ③ 협력 및 회원 병원이 의뢰한 환자의 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한다.

## 제2장 조직과 기능

### 제5조 (인력구성)

진료지원부에 소속되며, 실무진은 센터장과 부센터장, 간호사 및 행정직 등으로 구성한다.

### 제6조 (센터장)

1. 센터장은 URC 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센터장 유고 시,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 (전담인력)

협력 및 회원 병·의원을 관리하고, 진료 의뢰·회신 및 회송, 병·의원 간 네트워크 관리 및 기타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1. URC 팀장은 협력 및 회원 병·의원을 관리하고, 진료의뢰, 회신 및 회송 업무를 총괄하고 URC 직원을 관리 통솔한다.

## 제3장 업무절차

### 제8조 (진료의뢰업무)

1. URC 간호사는 협력병원 의료진 및 진료협력담당 관계자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으면, 환자의 기본 인적 정보 및 진료 정보를 제공받아 외래 진료 예약하며, 요양급여의뢰서 및 검사결과 등 구비서류를 요청한다.
2. 의뢰 환자의 상태 및 중증도에 따라 외래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응급실 진료를 설명하고 응급실 hotline을 안내한다.
3. 진료의뢰 시 별도의 진료협력센터 예약 시스템으로 협력의료기관에서 의뢰한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한다.
4. 진료의뢰는 협력의료기관에서의 전화, 팩스, 온라인, 진료의뢰·회송 중계포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5. 의뢰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정보 공개에 대해 설명 후 동의를 구한다.
6. 의뢰 의사에게 진료 절차 및 지침 서류 설명 후 예약된 시간을 안내한다.
7. 환자 내원 시 구비서류 확인 및 예약된 외래 진료과로 안내한다.
8. 본원 진료 종료 환자 중 1, 2차 의료기관에 회송된 환자가 상태 악화로 본원으로 재 의뢰 시 빠른 진료 연계를 위해 URC에서 자체 신속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 제9조 (회신 업무)

1. 의뢰 의사는 환자의 진료 결과 정보 열람에 대해 설명 후 공개 동의를 구한다.
2.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한 의사에게 회신(1차, 2차) 한다.
3. 1차는 진료 익일, 2차는 진단 및 향후 치료계획 확정 시점에 회신한다.
4. 회신 시 정보 제공의 범위는 회신 내역, 진단 검사 및 진단 병리, 영상 및 특수검사 결

과지, 투약 내역 등을 제공한다.

5. 회신서는 우편, 카카오톡 채널 등 제공하며,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http://urc.uuh.ulsan.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제10조 (외래회송업무)

1. 본원에서 급성기 및 중증질환 치료가 종료되었거나 연고지 병원으로 치료 연계가 필요한 경우 회송소견서를 작성하여 URC 로 의뢰한다.
2. URC 에서는 회송소견서를 확인하고,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병·의원을 선정한다 (본원의 담당 의사가 지정한 병·의원이나 의료진이 있는 경우 우선으로 진행함).
3.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 서류 지참 후 회송 병·의원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4. 진료의뢰·회송 중계포털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구한 후 동의 여부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중계포털 사이트에 회송소견서를 송부한다.

#### 제11조 (입원회송업무)

1. 입원 회송 대상자 선정은 주치의 또는 담당의가 결정하여 URC 로 의뢰한다.
2.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본원에서 치료 후 타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전원이 결정된 경우 담당의사는 입원 사유, 진료 과정의 주요 검사 소견, 진단, 시행된 치료 내용, 현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전원소견서를 작성한다.
3. 전원 소견서 작성 되면 진료협력센터 EMR 프로그램에 자동 연동되므로 회송 의뢰를 확인한다.
4. 의뢰를 받은 진료협력센터 전원 담당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와 면담을 통해 환자, 보호자의 요구도, 환자 상태, 회송 기관의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원 기관을 선정한다.
5. 진료의뢰·회송 중계포털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구한다.
6. 진료협력센터는 전원 소견서 등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원 요청 기관에 송부하여 전원 기관의 진료 및 수용능력 여부를 확인한다(만약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개별적으로 타 병원과 접촉하여 전원 연계를 원하는 경우 4, 5의 과정은 생략함).
7. 담당의사와 상의 및 전원 기관의 수용 여부에 따라 회송 일정을 정하고 전원기관과의 환자 및 보호자 상담을 연계한다.
8.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의료진 동승여부결정 및 이송 수단을 결정하고, 중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와 상의 후 확인하여 제공한다.
9. 전원 시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에 대한 정보, 전원 사유 등이 기재된 전원 소견서 및 검사 결과지, 영상 CD 자료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지참 설명 후 전원 병원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 제12조 (온라인 시스템 관리 및 운영)

URC 홈페이지([www.urc.uuh.ulsan.kr](http://www.urc.uuh.ulsan.kr)), 진료의뢰·회송 중계포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URC 회원들이 진료 의뢰 및 의뢰 환자 검사 결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관련된 불만 사항을 파악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및 운영한다.

**제13조 (협력병원 체결 및 관리)**

1. 협력병원 및 회원병원 신청 희망 병원은 본원 양식의 체결 신청서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서류 접수를 한다.
2. 협력병원 체결 신청서 접수 후 센터장, 행정본부장, 진료부원장, 병원장 품의 보고 후 관련 업무 협약 체결 식 진행 후 협약서 및 진료 협력병원 현판을 제공한다.
3. 회원병원의 경우 내부(센터장) 품의 후 진료협력기관 현판을 지급하게 된다.
4. 양 기관의 이의가 없을 시 협력 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5. 협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경과 시점에 상호간 재협의를 통해 협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협약 지속 시 협약서를 재 작성한다.

**제14조 (기타)**

1. 개원의 소리(건의 및 민원사항 등)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2. 협력병원 체결 및 협력병원 협조 사항 등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3. 회원병원 및 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의 애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부칙**

1. 이 규정은 199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05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5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년 0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8년 0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